

大田直轄市多家口住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 廢止 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目 次

1. 審 查 經 過 2
2. 提案說明要旨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3
4. 質 疑 與 答 辯 要 旨 3
5. 討 論 要 旨 3
6. 審 查 結 果 3

大田直轄市多家口住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 廢止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財務局長)

- 가. 庶民住宅의 建設과 供給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建築物 延面積 660 m² 以下로 建築한 住宅으로서 1世帶당 60 m² 以下로 建築된 多家口 住宅과 그 附屬土地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 112條 第 2項 (高級住宅에 對한 取得重課稅率)의 規定에 不拘하고 地方稅法 第 112條 第 1項 (取得一般稅率)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課稅 하였으나,

나. 建築物 延面積 660 m² 以下로 建築된 住宅으로서 1世帶當 60 m² 以下로 建築된 多家口 住宅과 그 附屬土地에 對한 取得稅는 一般稅率을 適用할 수 있도록 改定 地方稅法 施行令에 反映되었기 때문에 本 條例를 廢止하고자 함.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安鍾贊)

本 案은 庶民住宅의 建設과 供給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多家口住宅의 稅率을 取得稅 一般稅率을 適用하도록 條例로 定하여 施行하여 왔으나 地方稅法 施行令에 多家口住宅은 高級住宅의 範圍에서 除外하여 一般稅率을 適用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이 新設되므로 本 條例를 廢止함은 立法 體系上 妥當한 措置라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省 略

5. 討 論 要 旨 : 省 略

6. 審 查 結 果 : 原案 可決

大田直轄市 多家口 住宅에 對한 市稅不均一課稅에 關한 條例 廢止條例 案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가. 庶民住宅의 建設과 供給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建築物 延面積 660 m² 以下로 建築된 住宅으로서 1世帶 당 60 m² 以下로 建築된 多家口 住宅과 그 附屬土地에 對하여 地方稅法 第 112條 第 2項(高級住宅에 對한 取得重課稅率)의 規定에 不拘하고 地方稅法 第 112條 第 1項 (取得一般稅率)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課稅하였으나,
- 나. 建築物 延面積 660 m² 以下로 建築된 住宅으로서 1世帶當 60 m² 以下로 建築된 多家口 住宅과 그 附屬土地에 對한 取得稅는 一般稅率을 適用할 수 있도록 改正 地方稅法 施行令에 反映되었기 때문에 本 條例를 廢止하고자 함.

2. 參考事項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等を 위한 條例) 第 7條 및 業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 第 112條 (稅率) ① 取得稅의 稅率은 取得物件의 價額 또는 年賦金額의 1,000分의 20으로 한다.
 - ②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別莊, 골프場, 高級住宅, 高級娛樂場法人의 非業務用 土地, 高級自動車, 高級船舶을 取得한 경우의 取得稅率은 第 1項의 稅率의 100分의 750으로 한다
 - 別莊등을 區分하여 그 一部를 取得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地方稅法 施行令
 - 第 84條의 3 (奢侈性財産) ① 法 第 112條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別莊, 골프場, 高級娛樂場, 高級住宅, 高級自動車, 高級船舶은 다음 各號의 것을 말한다.
 - 2. 高級住宅
 - 다음 各目의 1에 該當하는 住宅과 그 垡地로 한다.
 - 다만, 住居 이외의 용도에 공할 目的으로 承繼 取得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1構의 建物은 延面積이 331제곱미터를 超過하는 것으로서 그 課稅時價標準額이 1,500萬원을 超過하는 住居用 建物
 - (2) 1構의 建物의 垡地面積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建物의 課稅時價標準額이 1,500萬원을 초과하는 住居用 建物
 - (3) 1構의 住宅에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타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중 1個이상의 施設이 설치된 住居用 建物
 - (4) 1構의 建物의 延面積 (共有面積을 포함한다)이 298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住居用 共同住宅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法豫告
 - 期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法 : 揭示公告 및 市公報 掲載 ('91. 11. 28 第 74 號)
 - 結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직할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직할시다가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서민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불균일과세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불균일과세) 건축물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로 건축된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 (세대에 한하여 85제곱미터 이하로 계획된 경우도 포함한다)된 다가구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 112조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용도, 구조등을 변경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3 규정의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는 이를 추정한다.

제 3조 (면제신청 등) 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과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 2014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2086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